

【 주간이슈 】

보험산업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논란에 대한 검토\*

선임연구위원 이태열

부연구위원 최형선

- 보험산업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와 관련하여 반대논리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.
- 보험산업의 참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증대시키고, 대출 자금의 부족을 초래하여 대출금리를 상승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,
  - ① 우선 지급결제용 자산을 계정 분리하고 전액 외부 예탁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급결제리스크를 완전 제거할 수 있으며,
  - ② 보험산업은 장기 보장성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특성상 고객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과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지급서비스를 활용할 것이므로 은행의 대출 자산 부족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할 것임.
-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할 필요가 없으며 그러한 사례도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,
  - ① 보험산업이 참여하고자 하는 방안은 우리나라 비은행금융기관의 참여 사례인 서민금융기관과 금융투자업의 경우를 참고한 것으로 두 사례 모두 중앙은행과의 차액 정산은 간접 수행하고 있으며,
  - ② 아직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한 사례가 없는 이유는 아직 제도적 도입 초기(캐나다 2001, EU 2009 예정)이고 지주회사방식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임.
- 지급결제용 상품이 부재하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상 분리계정을 의미하는 특별 계정의 근거가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여 지급결제용 유동성에 대한 규정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\* 본고는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 연구원 개인의 견해를 밝히 드립니다.

## 1. 서론

□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(2008. 11. 3)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에 대해 소액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허용함.

- 보험회사의 참여 허용은 고객에게 one-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금융겸업화시대에 업권간 공정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임.
- 허용 업무는 송금, 입출금, 요금 납부 등 금융투자업에 기허용된 업무와 동일한 범위로 설정됨.
- 참여 방식의 경우 중앙은행과의 차액 정산 업무는 대행은행을 통해서 간접 수행하며, 금융결제원의 소액지급결제망에는 직접 참여하는 유형임.
- 지급결제리스크의 제거를 위해 지급결제용 자산을 분리 계정하고 이를 전액 외부 위탁토록 함.

□ 보험산업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와 관련하여 반대의 논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.

- 첫째, 보험산업의 결제시스템 참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증대시키고, 은행의 대출 자금의 부족을 초래하여 대출 금리를 상승시키는 등 금융시장에 부작용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가 주장됨.
- 둘째,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없으며, 따라서 보험회사는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기보다 현재와 같이 은행에 의존해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.
- 셋째, 보험산업에는 현재 소액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상품이 없기 때문에 지급결제시스템 참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음.

□ 따라서 보험산업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보험산업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고자하는 목적과 그 유형의 안정성에 대해서 재정리할 필요가 있음.

## 2.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와 금융시장

### 가. 지급결제리스크

□ 보험산업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유형은 보험리스크가 지급결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을 전제로 구성되었음.

- 지급결제리스크는 기본적으로 당일에 지급지시가 이루어지는데 다음날 차액을 정산하는 소액지급결제의 특성 때문에 발생함.
  - 따라서, 파산,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금융기관이 차액을 정산하지 못할 경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.<sup>1)</sup>
-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지급결제용 자산을 분리 계정함으로써 보험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을 차단하고, 다시 이를 전액 외부 예탁함으로써 지급결제용 자산은 안정성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고자 함.
  - 이는 사실상 실시간 총액결제<sup>2)</sup>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금융기관의 파산 또는 대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고객의 지급결제용 자산은 예탁기관에 의해 그 안정성이 완벽히 보장될 수 있음을 의미함.

□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용 자산이 분리 계정으로 처리되어 전액 은행 또는 공인된 예탁기관에 예탁되었을 경우 지급결제리스크는 사실상 완전히 제거될 수 있을 것임.

### 나. 고금리 경쟁에 따른 대출 자산 부족 문제

□ 보험산업은 그 특성 상 고객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급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며 높은 수익률을 활용한 시중 유동성 흡수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됨.

1) AIG 부실이 보험회사의 부실 사례로 논의되기도 하나 정확히는 AIG라는 복합금융그룹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AIGFP가 크게 부실화되면서 동일계열 지주회사들이 그 책임을 떠안게 된 것으로 기본적으로 보험회사로부터 파생된 금융 위험이 아니었음.

2) 지급지시와 동시에 해당 계좌에서 자금의 이체와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지급결제 방식임.

- 자산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의 경우 CMA(cash management account)와 같이 지급결제용 자산 자체에 높은 수익률을 부여함으로써 상품 경쟁력을 제고할 여지가 있음.
  - 노후 대비 등 위험 보장 중심의 장기적인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산업의 경우 높은 수익률로 경쟁하기 보다는 서비스의 편의성으로 경쟁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.
    - 보험산업 지급결제시스템 참여의 핵심 목적은 고객 접점 확대 및 종합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과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계 유지에 있음.
    - 자산 운용 능력에 있어 금융투자업에 비해 상대적인 열위에 있는 보험산업이 지급결제용 계좌의 수익률 경쟁을 하는 것은 실익이 없음.
-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는 고객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고수익률을 활용한 시중 유동성 유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의 예금유동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판단됨.

### 3. 보험산업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와 유형

#### 가.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의 직접 참여 여부

-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의 직접 참여 문제는 ① 중앙은행과 차액 정산을 직접하는가 여부 ② 지급결제망에 직접 연결되는가 여부의 두 가지 관점에서 보아야 함.
- 차액 정산의 경우 보험회사가 중앙은행과 직접 수행하는 사례는 없으며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도 보험회사가 대행은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차액 정산을 하는 유형으로 예시하고 있음.
    - 우리나라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대표금융기관과 대행은행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차액 정산을 실시하고 있으며, 금융투자업은 개별회사가 대행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차액정산을 실시하는 체제임.
  - 우리나라의 경우 비은행금융기관의 소액지급결제망 참여 유형은 직접참여(금융투자업)와 간접참여(서민금융기관)인 경우가 모두 있으나 은행을 경유하는 경우는 없음.

-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대표금융기관을 경유하여 지급결제망(금융결제원)에 간접 참여 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의 경우 당초 대표금융기관 방식에 의한 간접 참여 방식을 선호하였으나 직접 참여 방식으로 결론이 내려졌음.

□ 보험산업은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함에 있어서 서민금융기관의 방식과 금융투자업의 방식 등 이미 허용되고 있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 것임.

<표 1> 우리나라 금융산업별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유형

| 구 분            | 예금수취기관     |                     | 비예금수취기관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| 은행         | 서민금융기관              | 금융투자회사              | 보험회사                |
| 소액지급결제망 참여     | 직접참여       | 대표금융기관              | 직접참여                | 직접참여                |
| 중앙은행<br>결제자금정산 | 직접참여       | 대표금융기관<br>대행은행      | 대행은행                | 대행은행                |
| 지급결제용 자산       | 예금         | 예금                  | 비예금유동성<br>(고객예탁금)   | 비예금유동성              |
| 리스크 관리<br>특징   | 한은<br>긴급지원 | 대표금융기관<br>(담보순채무한도) | 지급결제자산의<br>전액 외부 예탁 | 금융투자업수준<br>의 안정성 필요 |

자료 : 이태열, “지급결제시스템 참여와 종합금융서비스”, 보험연구원 제27회 보험경영인조찬회, 2007. 11

#### 나. 보험회사의 참여 사례 부재

□ 제도적으로는 허용되는 추세이나 아직 도입 초기여서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참여한 경우는 없음.

- 캐나다의 경우 보험회사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가 2001년 허용되었으며 EU의 경우는 새로운 지급결제지침을 2009년 11월까지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반영해야하는 만큼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자체적으로 참여한 충분한 사례를 확보하기가 어려움.
- 비은행기관에 대한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확대에 따른 리스크와 효율성을 고려하여 제도적으로 허용한 것이며, 개별금융기관은 스스로의 이해득실을 따져 참여

방식을 결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.

- 해외의 경우 지주회사방식으로 지급결제기관을 소유하여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임.

□ 우리나라의 경우도 금산분리 완화, 인터넷뱅크 도입, 보험지주회사 허용,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확대 등 제도적인 틀이 갖추어지고 있으며 보험회사들은 **회사의 사정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판단됨.**

- 보험 회사에 따라서는 사업성을 평가하여 현재와 같이 주거래 은행에 의한 펌뱅크(firm banking) 방식으로 최소한의 보험료 수납과 보험금 지급 업무 만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이는 회사 스스로의 선택사항임.

#### 4. 지급결제용 상품의 부재 문제

□ 캐나다, EU 모두 보험회사에 대해 예금 수취를 금지하고 있으나 캐나다의 경우는 예금과 유사한 상품에 EU의 경우는 예탁금을 기반으로 지급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.

- 캐나다의 경우 보험회사에 대해서 예금과 유사한 거치 연금(deferred annuities)을 대상으로 은행과 유사한 지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.
- EU의 경우는 지급결제용 유동성을 고유자산과 분리하고 보증 등을 통해 원금의 보전 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음.

<표 2> 해외 보험산업 지급결제 참여 유형의 특징

|                     | 캐나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E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비예금수취 기관 | 생명보험, 증권회사, MMMF(money market mutual fund) 등 비예금수취금융기관 | 비예금수취금융기관(보험회사, 증권회사 등), 모바일업체, 일반소매업체 등 광범위 |
| 지급서비스 종류            | 은행의 예금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지급서비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자 이체, 출금, 입금, 요금 납부 등                       |
| 보험산업 지급결제용 유동성      | 거치연금 (deferred annuities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유자산과 분리된 고객 자산 (은행, 보험회사의 보증요구)             |

자료 : 이태열, “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”, 보험연구원 CEO Report, 2008. 6

□ 예탁금 방식은 보험산업이 가장 안전하게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<sup>3)</sup>

- 금융투자업은 당초 MMF를 기반으로 지급서비스를 하고자 하였으나 은행권의 극심한 반대로 고객예탁금을 기반으로 하는 형태로 전환하였음.
  - 우리나라의 경우 캐나다처럼 보험산업이 거치연금을 기반으로 소액지급서비스를 수행한다고 할 경우 예금업무 침해 소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우려됨.
- EU가 비은행기관에 지급서비스를 확대하면서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해 예탁금 형태의 유동성을 규정했듯이 보험산업에 대한 예탁금 도입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됨.
- 예탁금은 기본적으로 혜택이 아니며 예금을 수취할 수 없는 기관이 고객이 임시로 맡긴 자금을 제한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.

□ 보험업법에는 분리 계정을 의미하는 특별 계정 조항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지급결제가 가능하도록 유동성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.

## 5. 결 론

□ 보험산업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는 철저한 리스크에 대한 통제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one-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이나 타금융권에 불합리한 피해를 줄 가능성은 없음.

- 보험회사는 지급결제리스크에 대한 확실한 통제를 전제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만큼 보험회사 참여에 따른 금융시장의 리스크 발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.
-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는 다양한 참여 유형이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보험회사가 고객들에게 다양한 지급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one-stop서비스가 가능한 체제여야 함.

3) 보험연구원이 신탁상품을 활용하여 지급결제용 유동성을 검토한 자료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본원은 그러한 자료를 작성한 적이 없음을 밝혀두고자 함.

- 보험산업이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은 금융 겸업화의 시대에 부응하고 공정경쟁의 틀에서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적어도 서민 금융기관이나 금융투자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.
- o 지급결제용 유동성의 경우 캐나다와 같이 보험상품을 기반으로 한 지급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하다면 EU의 경우와 같이 예탁금 형태로 참여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.